

|   |   |
|---|---|
| <p>.....</p> <p>이상 交通放送本部의 歳入·歳出決算書を 報告드렸습니다.</p> <p>○委員長 李昌根 交通放送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은 専門委員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専門委員 金泰鎬 専門委員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p> <p>.....</p> <p>(報告)</p> <p>1. 세 입</p> <p>○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운영계정 예산액 42,660,000,000원</li> <li>-주차장운영계정 예산액 99,040,000,000원</li> <li>-교통방송운영계정 예산액 7,358,000,000원으로 편성</li> </ul> <p>총예산액은 149,058,000,000원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수결정액은 172,835,311,866원</li> <li>-실제수납액은 159,435,461,711원</li> <li>-미수납액은 13,399,850,155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징수결정액의 7.8%에 해당됨.</li> </ul> <p>○미수납액 13,379,263,000원의 구체적 내역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유발부담금 징수결정액 18,577,695,170원 중 9.3%인 1,727,329,970원</li> <li>-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업체나 개인에게 부과된 운수과징금 15,937,270,038원 중 51%인 8,181,948,304원</li> <li>-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수입인 사용료수입 34,037,895,415원 중 10%인 3,379,502,193원</li> <li>-시설관리공단 및 경찰, 민간대행 견인수수료 징수결정액 5,479,694,068원 중 2%인 111,069,688원으로 나타났음.</li> </ul> <p>이중 운수과징금 징수실적은 전년도에는 54%에 머물러 해마다 아주 저조한데 세수확보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서 철저한 수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p> <p>한편, 미수납액 처리 실태를 보게되면 견인수수료 미수납액 111,069,688원 중 18%인 20,587,03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상 결손처분은 거소불명 또는 시효 등의 이유로 징수하지 않기로한 세입액으로</p> | <p>이는 일선 공무원이 업무를 해태할 경우 다수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독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p> <p>○과오납 반환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수과징금 수납액 중 22,346,010원</li> <li>-교통유발부담금 수납액 중 36,969,410원</li> <li>-주차장 사용료 수납액 중 25,464,770원으로 나타났음.</li> </ul> <p>전체 수납액으로 볼때 적은돈이라고 생각되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공무원의 과오로 잘못 책정된 것인 만큼 공권력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세심한 업무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p> <p>○주차장운영계정 중 사업 외 수입에서 전입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거 매 회계연도의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토록 되어있음. 따라서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징수결정액인 210,334,123,810원 중 10%인 21,034,412,381원을 세입으로 계상해야 할 것을 예산액 194,532,000,000원 중 10% 19,453,200,000원을 계상하여 1,581,212,391원이 과소 계상되었음. 이것은 전년도에는 지적된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p> <p>2. 세 출</p> <p>가. 교통사업운영계정</p> <p>○전용</p> <p>해당사항 없음.</p> <p>○이용, 이체</p> <p>해당사항 없음.</p> <p>○다음년도 이월액</p> <p>시설비 예산현액 10,154,000,000원 중 3.8%인 390,679,060원을 이월시킴.</p> <p>○불용액</p> <p>교통사업운영계정 예산현액 42,790,379,000원 중 13%인 5,334,753,590원이 불용처리됨.</p> <p>불용액의 주요내용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쇄비, 도서 및 자료수집, 각종 소모품구입, 급량비, 판서당경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21,131,950원</li> <li>-상계·미야지역 TSM사업, 버스전용차선 실시,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인 시설비 예산현액 10,154,000,000원 중 14%인 1,415,022,280원으로 이 사업들은</li> </ul> |
|---|---|

|  |  |
|--|--|
| <p>교통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으로 14%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된것은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볼수 있음.</p> <p>-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빌려쓴 예수금이나 예산현액 1,415,000,000원 중 42%인 600,315,100원 불용 처리됨. 예수금상환 이자는 연리 7%로 이는 정확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항목으로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라 생각함.</p> <p>-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설립준비를 위한 예산현액이 32,351,000원 중 89%인 28,78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이는 예산의 과다책정 임.</p> <p>-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 수당 및 버스운영제도 개선공정회 명목의 보상금 예산 6,200,000원 중 90%인 5,555,000원이 불용처리 됨.</p> <p>-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2,000,000,000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이는 사업자체를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지난 번 예산심의때 서울의 토지여건상 대형버스의 공용차고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그린벨트 이외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 추진하기 힘든 정책으로 지적된 바가 있음.</p> <p>- 신고개도위원회 및 교통민원실무심의회의, 공청회 등 명목으로 보상금 24,088,000원 중 71%인 17,288,000원이 불용됨.</p> <p>- 주차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일반운영비 45,126,000원 중 31%인 14,459,450원이 불용됨.</p> <p>-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일반운영비 356,950,000원 중 54%인 193,518,300원이 불용처리 되고, 복지적 차원의 보상금 45,246,000원 중 22%인 10,908,620원이 불용됨. 이상과 같이 과다 불용처리된 것은 다음년도 예산 심의때 적의 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p> <p>○예비비<br/>         교통사업운영계정 예비비 287,407,000원 전액을 전용차선제 단속원 복장 및 장비 구입비로 지출하였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p> | <p>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업무에 따른 제정비는 예측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p> <p>나. 주차장운영계정</p> <p>○전용<br/>         천호·잠실·영등포구청역 등 9개 지역 주차장건설을 위한 시설부대비 예산액 117,263,000원 중 33% 39,000,000원을 등 사업의 시설비로 전용 하였음. 그 이유는 '94년 6월말 개통예정인 도림천변 도로개설 공사로 봉천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확보가 필요 하였다고 함.</p> <p>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500억원까지 공사비일 경우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0.18%로 계상토록 되어있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용이므로 시설비지출과 연계되어 시설부대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함.</p> <p>○이용 및 이체<br/>         해당사항 없음.</p> <p>○다음년도 이월액<br/>         천호·잠실 등 9개 지역 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산은 당초 37,258,000,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시설부대비에서 39,000,000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37,297,000,000원으로 되었고 이 중 66%인 24,546,136,490원을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이월 사유로 주로 동절기 공사중지나 절대공기 부족 또는 지하철 건설공사와 병행추진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고이월은 계절적 공사중지, 절대공기부족, 계획변경, 용지매입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더욱이 당초부터 년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이월을 전제로 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p> |
|--|--|

지금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 사업은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은 당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에 맞추어 편성하고 그 해에 계획된 공사가 마무리 됨으로 예산도 전액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회계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예산 현액의 66%를 사고이월시킨 것은 계획된 공사가 지연되어 연말에 지출원인 행위만 하고 나머지 이월시킨 것으로 생각함.

○불용액

- 민간인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있는 불법주차건인 대행사업과 관련된 민간이전 예산현액 18,659,572,000원 중 7.3%인 1,369,080,620원이 불용처리 됨,
- 잠실, 월계역, 신내택지개발지구 등 6개 구역 주차장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159,646,000원 전액 불용처리 됨. 이것은 계획된 주차장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하철공사와 연계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계획된 것이 지하철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착공조차 못하여 불용처리된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예산은 당해년도에 착공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차장 건설(천호, 영등포구청역, 개화산역 등 9개 지역)을 위한 시설비는 당초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시설부대비로부터 39,000,000원을 전용까지 하였으나 669,445,940원을 불용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설부대비는 당초 예산액 117,263,000원 이었으나 시설비로 39,000,000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78,263,000원으로 감소되었고 이 중 52%인 40,816,000원이 불용된 것은 애초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보여짐.
- 민간인으로 하여금 주차장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융자금으로 책정된 5,000,000,000원 중 70%인 3,500,000,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의회에서 예산까지 배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홍보가 부족하였거나 융자금을 사용하는데

까다로운 조건을 불허 실질적 융자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함.

○예비비

주차장운영계정 예비비 4,141,475,000원에 대한 전용·이용 및 이체는 없고 전액 불용처리 함.

다. 교통방송운영계정

○전용

해당사항 없음.

○이용·이체

해당사항 없음.

○다음년도 이월액

해당사항 없음.

○불용액

교통방송본부의 '94회계연도 예산현액 7,176,799,000원 중 11%인 791,991,790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구체적으로

-비 정규직 보수예산현액 2,097,663,000원 중 124,946,170원

-여비 48,500,000원 중 46%인 22,229,600원

-근거리 정보통신망 설치, 음반 및 도서 관리 시스템, 헬기장착용 방송장비 등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154,324,000원 중 51%인 78,200,700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이는 방송을 위한 중요한 장비구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이자로 책정된 57,750,000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음.

○예비비

교통방송운영계정 예비비 181,201,000원에 대한 전용, 이용 및 이체, 이월은 없고 전액 불용처리함.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會計年度 交通事業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에 대해서 質疑와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本件은 交通局長과 交通放送本部長을 상대로 해서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십니까?

黃炳五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